

평창군조례 ·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10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3조제2항
 -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의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으로 인용조문 수정
- 조례안 제7조 단서의 신설
 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신설
- 조례안 제8조제1항
 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포일을 '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'로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”를 “평창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제19조제6항”을 각각 “제26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공포 또는 고시일”을 “공포일과 공고·고시일”로, “공보가 발행”을 “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u>평창군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</u> | <u>평창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</u> |
| 제3조(조례) ① (생 략) | 제3조(조례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 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,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 | ②-----제26조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26조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|
| 제7조(공포방법) 조례·규칙 등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 | 제7조(공포방법) ----- ----- ----- 단 -----만,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군 -----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 -----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 -----나 게시판에 게시한다. |
| 제8조(공포일 등) ① 조례·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. | 제8조(공포일 등) ① ----- -----공포일과 공고·고시일----- -----공보 -----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 -----판에 게시--.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작 성 자 |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|
| 연 락 처 | (033)330-2206 |

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6조 (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)

① ~ ⑤ 생략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.

⑦ ~ ⑨ 생략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0조 (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)

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.

② 생략

제31조 (공포일)

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·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.